

- 민간위탁중인 서소문별관보다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
 - ┌ 1인당 관리면적 : 본관 182평, 별관 307평 (168%)
 - └ 평당 청소 비용 : 본관 103천원, 별관 39천원 (38%)
- 청소업무 이외의 부대지원 업무에 치중함

- 로써 청사내외 환경 정비가 소홀
- 수년간 반복적인 청소업무수행으로 기동성과 생산성이 떨어짐.
- 推進計劃
 - 보안유지가 필요한 최소구역을 제외한 청소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구 분	시행시기	위 탁 범 위	감축인원	예산절감(연 간)
1 단계	'99. 4	○ 후관, 신관 및 대지부분 -대 지 : 3,287평(전체면적 3,728평) -건 물 : 2,612평(6,010평중 43%)	14명	97백만원
2 단계	2001. 1	○ 본관 3층 및 지하상황실을 제외한 전지역 -대 지 : 3,287평(전체면적 3,728평) -건 물 : 4,128평(6,010평중 68%)	12명	237백만원

- 감축인력 조치
 - 1 단계 : 정년퇴직 7명, 소요부서 진출조치 및 위탁업체 재취업 7명
 - 2 단계 : 소요부서 진출 및 위탁업체 재취업 12명
- 용역시행 : '99. 4. 1

廳舍警備 및 行政通信시스템 改善

- 현행 인력에 의한 경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행함으로써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청사방호체제를 구축하고
- 노후된 통신시설을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종합정보통신 기반을 구축,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함.

□ 推進方向

- 서소문별관 청사부터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시행결과 분석 후 본관 확대 실시
 - 1 단계 : 서소문별관 청사 (1999. 8)
 - 2 단계 : 본관 청사 중요부서 (2000. 6)
 - 3 단계 : 본관 청사 각 실·과 (2001. 6)
- 통신시설의 불시고장예방 및 정보통신망 통합 수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다양화

□ '99年 事業計劃

- 사업기간 : '99. 3. ~ 9.
- 소요예산 : 824백만원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384, 행정통신시스템 개선 440)
- 사업내용
 -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 서소문별관 청사(1·2동, 후생동) 각 실·과 사무실에 근접식카드리더기(80개소), 열선감지기(26개소) 설치
 - 각 층 주요통로, 승강기내부 75개소, 청사의 광 7개소에 CCTV카메라 설치
 - 상황실에 중앙통제컴퓨터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폐쇄회로 TV시스템 각 1식 설치
 - 방호인력 감축(97명 → 85명)
 - <행정통신시스템 개선>
 - 본관 노후 전자교환기 교체
 - 본관↔서소문별관간 자체 통신망 구축
 - 정보화담당관실에서 '99 구축예정인 광통신망 공동사용
- 개선시행 : '99. 10.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견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공포(98.2.24)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

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설치단위, 가입범위, 협의회구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1998년 12월 31일 공포된 같은법시행령과 정부(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재정하게 된 것임.

2. 추진배경

- 헌법 제33조는 일반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권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절대다수의 공무원에게 단결권조차 허용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관계법률이 제정되었음.

3. 기대효과

- 6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공무원 개인의사가 아닌 단체의사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 하급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인 의사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상하간의 이해촉진으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행정을 개선하며,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는 견제작용을 함으로써 부정부패방지와 공직윤리도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됨.

4. 주요내용별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설립목적, 설립기관의 범위, 가입금지공무원의 범위, 설립절차, 협의회규정, 가입·탈퇴 및 제명, 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토결과 내용상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별 문제점은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완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1) 설립단위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또는 4급상당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고, 5급이하 기관은 다른 5급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통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임.

-이렇게 할 경우 99년 1월 1일 현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4급이상 기관은 56개이고 5급이하는 15개에 이르고 있어 5급이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권익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됨.

·4급이상기관 : 본청 1, 직속기관 3, 시의회 1, 사업소 51(기관별현황 별첨)

2)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안 제11조의 「합의사항이행」에는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는데, 상호 불이행에 따른 대책(중재)이 필요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